

연번	관세번호	주민(법인)명	납세자기본주소	부과금액(원)	위반내용	반송사유
11	000639	김*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지*층***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2	000642	P*O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번길 **,***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3	000643	김*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동***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4	000644	이*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나길 **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5	000646	신*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지*층(신림동)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6	000648	김*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길 **,***호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7	000650	권*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호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8	000651	고*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호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19	000652	박*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지*층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0	000653	조*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길 **,***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1	000659	신*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지*층***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2	000662	이*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지*층***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3	000663	정*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4	000665	지*왕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길 *-*,***호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5	000666	손*민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가길 **,***호	10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26	000667	김*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층*호	50,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462호

신림5·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신림5·6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실시예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행위제한(안)

가. 제한목적: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함.

나.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연 번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1	신림5구역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169,069
2	신림6구역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37,771.3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나) 건축물 대장 전환 및 분할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다)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 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단, 제한제외 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관악구청 6층 주택과(☎02-879-6391)

5.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관악구 주택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463호**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